

忠清北道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2. 1. 20  
內 務 委 員 會

1. 審查結果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1월 8일

○ 회부일자 : 1992년 1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75회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1992. 1. 17)상정.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곽소열)

가. 제안이유

○ 道議會 效率的 運營을 위해 地方自治法이 改正(법률제4464호, '91. 12. 31)되고 內務部長官으로부터(지기01210-12628, '91. 12. 28)道議會事務職員의 정원 9명이 보장됨에 따라

○ 忠清北道議會事務局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定數條例中題名을 忠清北道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等에관한條例로 改正하고 각 條의 “事務局”을 “事務處”로, “事務局長”을 “事務處長”으로 개칭하고 현재 “39명”으로 되어있는 事務職員의 정수를 “48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조례조명·사무국명칭·사무직원정수개정(조례제1조내지제4조)

현 행	개 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명 : 충청북도 “議會事務局”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li> <li>• 제1조 내지 제4조중 “事務局”, “事務局長”</li> <li>• 제4조중 사무직원정수 “39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 “議會事務處”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li> <li>• 제1조 내지 제4조중 “事務處”, “事務處長”</li> <li>• 제4조중 사무직원정수 “48名”</li> </ul>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민귀식)

- 道議會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地方自治法이 개정(법률제4464호, '91. 12. 31)되고 지난 1991년 12월 28일 內務部長官으로부터 도의회 사무국의 사무처리 부족인력 9명(운영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전문위원 2명, 전문위원실보조 2명, 기록요원 2명, 자료조사지원 2명, 부의장실안내요원 1명)이 地方自治團體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항 및 제12조 제2항의 規定에 의거 증원승인됨에 따라 조례제명 및 事務局 명칭과 事務職員 정수를 현재의 “39名”에서 “48名”으로 改正하는 것으로써 本 條例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 8인, 찬성 8인)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